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(가칭)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

2910

제출년월일: 2021년 10월 15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전국 최초로 「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」가 제정되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(가칭)를 설치하고자 함
 - ※ "경계선지능인"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함(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2조)
- 나. 본 센터는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, 인식개선 사업, 정책연구, 네트워크 구축, 지원대상자 발굴, 상담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「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」 제7조(위탁등)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6조에 의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 민간위탁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 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6조(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) 및 제7조(위탁 등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1호
 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-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는 전연령 대상 시설로서 이용자 특성이 다양하며 경계선지능인 선별, 본인 및 가족 상담, 사례관리,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됨
 - 경계선지능인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

나. 위탁개요

-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관리 운영
- 위탁유형 : 시설형 위탁
- 위탁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(2022. 4. 1. ~ 2024. 3. 31.)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(신규위탁)
- 소요예산(위탁금) : 1,275백만원('22년)
 - 인건비 399백만원('21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원)
 - 운영비 376백만원(인테리어 및 사무기기 등 구입, 공공운영비 등)
 - 사업비 500백만원(연구개발, 네트워크 구축, 인식개선 사업 등)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, 교재·교구·매뉴얼 등 개발
- 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별, 상담 및 지원, 사례관리, 가족상담
-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, 네트워크 구축, 인식개선 사업
- 센터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 등

라. 시설개요

○ 소 재 지 : 서울시(예정)

○ 규 모: 300 m² 내외

○ 공간구성(안) : 교육장, 상담실, 사무실, 이용자 휴식공간 등

○ 이 용 대 상 : 경계선지능인 및 그 가족, 관련기관 종사자 등

마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

제6조(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)

-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,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
 - 2.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, 운영 및 지원
 - 3.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
- 4.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
- 5.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
- 6.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
- 7.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탁 등)

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

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민간위탁 예산편성 예정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사업팀 임소진 (☎ 2133-3972)